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개정령(안)

- ◆본 법령안은 지난 4월 23일자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5월 13일 까지 의견서를 환경처장관(참조 : 대기보전국장 T.421-0245)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령안은 지면시정상 실지 못하고 각 지역협의회로 우송하오니, 필요하신분은 본 연합회나 협의회사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환경처장관에게”를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로 하고, 동조동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첨부서류를 갈음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 감리단의 기술검토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 다음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정상운영여부 확인기기의 부착대상사업장 등)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여야 할 사업장 및 기기의 종류는 환경처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방지시설의 고장 또는 수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즉시 수리·교체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후에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진신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1항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법 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 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개선 또는 이전기간중에”를 개선기간(조업정지기간을 제외한다) 또는 이전기간중에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는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이 있은 후에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개선계획서 제출이전에 개선된 경우에는 이를 개선계획서 제출일에 개선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기타 환경처장관이 국민의 건강상의”를 “기타 주민의 건강상의”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날(배

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채취일)부터 법 제16조 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이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개선계획서 또는 이전계획서에 명시한 기간(동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 또는 이전명령에 명시된 기간)의 만료일,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 사용금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취소일.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 중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이전명령, 사용금지명령”을 각각 “법 제18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이전명령, 허가취소, 사용금지명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완료 예정일까지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동 기간이내에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동 기간이내에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개선명령 및 이전명령과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조정은 당해 명령을 받은 후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개선계획서 또는 이전계획서에 명시된 기간을 앞당겨 이행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고한 경우에 한한다)되어 부과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무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제16조제1항 중 “법 제16조 내지 법 제18조 또는 법 제21조”를 “법 제16조 내지법 제18조, 법 제20조 또는 법 제21조”로 하고, 동조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이 경우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조업정지의 이행보고와는 따로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제조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제2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17호 중 “수시

점검(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경우에 한한다)"을 "수시점검(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며, 동조동항제18호 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경우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19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조제1항제10호중 방지시설업 또는 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교육을 받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를 제외한다.

제31조제1항에 제23호 내지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3. 법 제12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설계시공의 승인

#### 24.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및 변경승인

제31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6호 중 “수시저검(자동차운수 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경우에 한한다)”를 수시점검(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며, 동조동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7. 법 제3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명령 및 개선결과의 보고수리

제31조제2항제8호 중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지정”을 “검사대행자의 지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2호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조. 법 제59조제1항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법 제59조제1항제10호 중 배출시설 관리인의 교육을 받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제3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및 인증검사(인증의 경우에는 수입자동차에 한한다)

제31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의 등록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환경처장관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한 주민 및 농작물 등의 피해발생예방 또는 광역적인 대기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및 자동차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 등 법령 위반여부를 확인하거나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별표 6]을 삭제한다.



현 행	개 정 안	사 유
1-2(생 략) 3. 기타 환경처장관이 국민의 건강상의 위해와 주변환경상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u>② 환경처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이전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공업용지 지구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사업장인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  제9조(오염물질배출량 등) ① 제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허용기준과 오염물질배출량은 다음 각호의 배출기간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배출허용기준초과일일오염물질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 (생 략)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 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체취일)부터 법 제16조 내지 제18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사용금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  <u>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초과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법 제16조 내지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사용금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 오염물질체취일(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체취일)의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배출가스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배출가스의 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u> ③-⑤(생 략) 제10조(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②(생 략)	1-2(현행과 같음) 3. 기타 주민의 건강상의 .....  <u>(삭 제)</u>  제9조(오염물질 배출량 등)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  <u>법 제16조 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이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개선계획서 또는 이전계획서에 명시한 기간(동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 또는 이전명령에 명시된 기간)의 만료일,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사용금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취소가 있은 경우에는 그 허가취소일.</u> ② .....  <u>법 제 18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소·사용금지명령</u> ..... ..... ..... .....  ③-⑤(현행과 같음) 제10조(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②(현행과 같음)	-법률규정의 "주민의 건강상의 위해"보다 더 넓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법률의 용어와 같이 정리함. -시·도지사가 개개사업장의 이전명령에 대하여 환경처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승인을 얻을 수 있으므로 삭제  <u>개선명령·이전명령을 받은 자가 제출한 개선계획서·이전계획서만을 인정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명령·이전명령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업정지등은 그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허가취소된 자에게는 위반행위로부터 허가취소일까지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u>

현 행	개 정 안	사 유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부과 대상오염물질 등을 배출함으로써 법 제16조 내지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사용금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사업장별로 2회계년도를 단위로 이를 산정한다.</p> <p>제12조(부과금의 조정) ① 환경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p> <p>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 예정일까지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동 기간이내에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 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p>	<p>③ ..... ..... 법 제18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해가취소·사용금지명령 ..... ..... ..... 제12조(부과금의 조정) ① ..... ..... ..... 1. ..... ..... 이행이 완료(개선명령 및 이전명령과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조정은 당해 명령을 받은 후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개선계획서 또는 이전계획서에 명시된 기간을 앞당겨 이행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 되어 ..... ..... 2. (현행과 같음) ②-⑤(현행과 같음)</p>	-기간내 개선을 완료한 경우, 부과금을 제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
<p>②-⑤(생 략)</p> <p>제15조(징수비용 교부) ①-②(생 략)</p> <p>제16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법 제16조 내지 법 제18조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등 이전명령·사용금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15조(징수비용의 교부) ①-②(현행과 같음)</p> <p>제16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 법 제18조, 법 제20조 또는 법 제21조 ..... ..... ..... 이 경우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조업정지의 이행보고와는 따로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3회 이상의 배출허용기준 초과행위로 인해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함
<p>②(생 략)</p> <p>제21조(비산먼지 발생사업) ..... .....</p> <p>1-6(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제25조(제작차 배출가스검사업무수탁기관지정의 취소) 환경처장관은 제작차배출가스 검사업무의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1-2(생 략)</p>	<p>②(현행과 같음)</p> <p>제21조(비산먼지 발생사업) ..... .....</p> <p>1-6(현행과 같음)</p> <p>7.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제조업</p> <p>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p> <p>제25조(제작차 배출가스 검사업무 수탁기관 지정의 취소) ① ..... ..... 1-2(현행과 같음)</p>	-비산먼지발생사업에 면지 를 다양배출하는 사업을 추가함.

현 행	개 정 안	사 유
<u>(신 설)</u>	<u>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u>	- 제작차 배출가스검사업무 수탁기관지정의 취소시에도 청문절차를 준용도록 함으로써 합리성을 확보도록 함.
<u>제31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별표 6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1호내지 제16호 및 제19조내지 제22호의 권한을 제외한다.</u>	<u>제31조(권한의 위임) ..... ..... &lt;단서삭제&gt;</u>	
<u>1-16(생 략)</u>	<u>1-16(현행과 같음)</u>	
<u>17.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수시점검(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경우에 한한다)</u>	<u>17.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 한한다)</u>	
<u>18.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개선결과의 보고수리(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경우에 한한다)</u>	<u>18.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개선결과의 보고수리(삭제)</u>	
<u>19.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단서신설)</u>	<u>19.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동조 제1항제10호 중 방지시설업 또는 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제외한다.</u>	- 방지시설업 또는 자가측정대행업의 기술요원의 교육은 지방환경청장에게 기위임되어 있으므로 시·도의 권한에서 제외
<u>20-22. &lt;생 략&gt;</u>	<u>20-22. (현행과 같음)</u>	
<u>&lt;신 설&gt;</u>	<u>23. 법 제12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설계시공의 승인</u>	
<u>&lt;신 설&gt;</u>	<u>24.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및 변경승인</u>	
<u>②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u>	<u>② ..... ..... 1. -2&lt;생 략&gt;</u>	
<u>3. 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설계시공의 승인</u>	<u>&lt;삭제&gt;</u>	
<u>4.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u>	<u>1. -2(현행과 같음)</u>	
<u>5. (생 략)</u>	<u>&lt;삭제&gt;</u>	
<u>6.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수시점검(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경우에 한한다.)</u>	<u>5. (현행과 같음)</u>	
<u>7.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개선결과의 보고수리(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경우에 한한다)</u>	<u>6.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 한한다)</u>	
<u>8. 법 제40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지정·변경지정, 지정의 취소 및 영업정지</u>	<u>7. 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명령 및 개선결과의 보고수리(삭제)</u>	
<u>9. -11(생 략)</u>	<u>8. ..... 검사대행자의 지정</u>	
<u>12. 별표 6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1항제1호내지 제16호 및 제19호 내지 제22호에 규정된</u>	<u>9. -11(현행과 같음)</u>	
	<u>&lt;삭제&gt;</u>	

현 행	개 정 안	사 유
<p>권한</p> <p>13. 법 제59조제1항제8호·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단서신설)</p> <p>③ (생 략)</p> <p>1.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검사</p> <p>2. -3(생 략) (신 설)</p> <p>제32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환경처장관은 중대한 대기오염사고의 발생 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는 광역적인 대기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별표 6의 사업장의 사업장 및 자동차(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 등 법령위반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p> <p>②-③(생 략)</p>	<p>13. 법 제59조제1항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법 제59조제1항제10호 중 배출시설관리인의 교육을 받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p> <p>③(현행과 같음)</p> <p>1.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및 인증검사(인증의 경우에는 수입 자동차에 한한다)</p> <p>2. -3(현행과 같음)</p> <p>4.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의 등록</p> <p>제32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환경처장관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한 주민 및 농작물 등의 피해발생예방 또는 광역적인 대기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및 자동차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등 법령위반여부를 확인하거나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p> <p>②-③(현행과 같음)</p>	<p>-방지시설업 또는 자가측정 대행업의 기술 요원교육은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교육불참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한도 동시에 위임토록 함.</p> <p>-대기오염 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시 사업장 및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처장관이 직접조사토록 할 수 있게 함.</p>

#### •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질의 응답(환경처 소음·진동업무편람 발췌)

질의 내용	회신 내용
1. 당 공장옆에 논이 있는데 그 논의 일부를 임차하였을 경우 그 논에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소음·진동규제법상 부지경계선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장옆에 있는 논을 임차하여 부지경계선으로 확장하였다 하더라도 임차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공장부지로서 활용하지 않으면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상의 부지경계선으로 인정할 수 없음.
2. 연한 비닐원단을 재단하는데 사용하는 신일유압기계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 소음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본 기계는 유압의 원리를 이용한 프레스로 눌러 자르는 재단기로서, 1m 거리에서의 정상소음이 70~72dB(A), 자를 때의 최고소음이 78dB(A)로서 소음이 적을 뿐만아니라 그 용도상으로 보아서도 설치허가를 요하는 소음배출시설의 프레스 또는 절단기에는 해당되지 않음.
3. 소음측정단위 dB의 절차 및 용어해설과 측정기에 A, B, C 구분에 관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데시벨”은 DECIBEL의 약자로서 소리의 세기를 표시하는 단위임. 건강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세기는 0~120dB이며, 일반적으로 전화벨소리는 55~60dB, 타자기소리는 60~70dB 정도가 됨. ABC의 특성이란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음의 주파수의 특성을 말하며, A특성은 55phon이하, B특성은 55~85phon, C특성은 85phon이상의 곡선을 사용하여 만듬.
4. 우리회사에서 시공한 사업장에 대하여 소음원(기계실)으로부터 소음을 측정코자 하는데 측정위치와 소음규제치는 어떻게 될까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의 규정에 의거 소음원의 부지경계선 중 피해가 가장 우려(예상) 되는 지점으로서 소음도가 높은 곳을 택하여야 되므로 기계실의 경계선상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방향쪽의 소음도가 가장 높은 지점에서 측정해야 하며,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배출허용기준(기준치)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의거 산출한 대상소음도를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별표 4] 소음의 보정표에 의하여 보정된 평가소음도가 50dB(A) 이하가 되어야 함.

질의 내용	회신 내용
5. 섬유류 제조업소에서 사용하는 연사기와 합사기가 소음배출 시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섬유류제조업소의 연사기와 합사기는 섬유제조의 실제 조공정에 사용되는 기계로서 방적기계에 해당되므로 소음·진동규제법상의 소음배출시설에 해당됨.
6. 앨범제조업체에서 단순히 종이만 자르는 재단기가 소음배출 시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동 기계가 유압의 원리를 이용하여 단순히 종이만 눌러 자르는 기계라면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소음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7. 냉동기에 설치된 20마력짜리 압축기는 소음배출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냉동기는 압축의 원리를 이용한 기계로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소음배출시설 중 동력합계 10마력 이상의 압축기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9조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함.
8. 신선기 17대(15마력 4대, 75마력 8대, 5마력 5대) 및 연승기 5마력 6대를 설치 조업할 경우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 허가대상 여부는?	신선기는 열간압연으로 철사를 만드는 기계이나 압연기와는 구조 및 그 기능이 상이하여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 규정된 소음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연승기(연선기)도 신선기로부터 철사를 끄는 기계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8. 8대의 직기와 5대의 준비기(해사기 2대, 정경기 1대, 면사기 1대, 관권기 1대)가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허가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직기 및 편기는 어떤 것인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 10대 이상의 직기를 소음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직기란 직물을 짜는 기계로 족답직기, 연직기, 자동직기, 무저직기, 환상직기 등이 있고, 편기란 편물을 뜨는 기계로서 대별하면 횡편기와 종편기로 구분됨.
10. 우리 봉제업소에서는 동력재봉기( $1/4$ 마력×19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동 시설에 대하여 소음·진동규제법상 배출시설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공업용 재봉기 80대 이상은 소음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함.
11.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하던 중 회사가 사정으로 타업체를 당 사업장의 컴퓨터에 무료임대하였을 경우, 신규업체의 규모가 200마력 정도라고 가정할 때 배출시설 설치허가 여부는?	사업장의 부지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다를 경우 다른(신규)사업자가 설치한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그 신규사업자가 별도로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함.
12. 120Kw 미만의 비상용 발전기를 마력으로 환산후 타소음 배출시설과 합산하여 동력합계 35마력 이상이 되는 경우에 소음·진동규제법상 소음배출시설에 해당여부?	120Kw 미만의 발전기를 마력으로 환산후 타소음 배출시설과 합산하여 동력합계 35마력 이상의 경우에 소음·진동규제법상 배출시설에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아므로 120Kw 미만의 비상용 발전기는 타소음 배출시설과 합산적용치 않도록 해야 함(동력합계가 35마력이상 : 소음배출시설 (1)~(16)항에 해당되는 기계에 한함)

\*본 내용은 지난 3월 7일 본연합회에서 환경처에 질의한 정수장오니 및 소각시설 설치승인에 관한 사항과 그 회신입니다.

질의 내용	회신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중 17. 가의 단서규정에 의한 정수장오니는 특정폐기물의 분류에서 제외되어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는 바, 정수장오니의 한계를 수도사업법에 등록된 도, 시, 군 및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처리하여 발생한 슬러지지만 정수장오니로 분류하고, 기업체가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공급받아 같은 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생한 정수처리 슬러지는 특정폐기물로 분류하는 이유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중17. 가의 규정에 의한 정수장오니를 수도법제2조제5호의 정수시설에서 발생되는 오니(정수장오니)만을 일반폐기물로 관리도록 하고 기업체의 정수장오니를 특정폐기물로 관리도록 한 것은 특정폐기물의 분류기준은 폐기물의 유해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처리책임을 누가 지느냐도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개별업체의 발생폐기물을 배출자 책임하에 처리도록 하기 위한 것임.
나. 같은 법 제28조제2항 및 시행규칙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시 특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한 개의 소각시설에서 혼합하여 동시에 소각처리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을 때 민원편의와 행정의 능률성을 고려하여 승인소관부서는 일원화(지방환경청)하고 심사시에만 관청간에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동일공장에서 발생되는 특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1개의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함께 소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으면 됨. 다만, 특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시 그 내용을 포함하여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임.

## ◎ 환경처공고 제1992-9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취지 및 주용내용을 법령안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2년 4월 2일 환경처장관

###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안)입법예고

#### 1. 제정취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법률 제4,493호('91. 12. 31.)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수립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환경개선과 관련된 사업으로 함.

나.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은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 까지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환경처장관은 이를 종합·분석하여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토록 함.

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은 1,000m<sup>2</sup>를 초과하는 모든 건물과 1,000m<sup>2</sup>이하의 건물이라도 오염요인이 큰 업종에 대하여는 규모에 차등을 두어 부과대상으로 하되 주거용 시설물 및 공공용 시설물을 제외함.

라.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유자동차의 범위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운송사업과 공공용 및 소방, 청소, 환자수송 등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을 부과대상으로 함.

마. 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은 시설물의 경우 시 이상 지역과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 및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하고, 자동차는 전국을 대상으로 함.

바. 부담금산정에 필요한 연료 및 용수사용량은 실측에 의하여 산정하되 측정기 미부착시는 표준연료 및 표준용수사용량을 적용토록 함.

사. 개선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단위당 부과금액, 연료계수,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차령계수 등 각종 부과계수를 정하고 부담금부과징수상

의 오류에 대한 조정신청절차와 사용용도 등을 정함.

아. 공단 등 사업장이 밀집되어 오염이 심화된 지역의 환경개선시설을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오염방지사업은 계획조사비, 공사비, 부지비 등의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함.

자.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부담금은 원인자부담총액에 각 원인자별 사업장규모, 오염물질의 양과 질 등에 비례한 금액으로 함.

차. 환경오염방지사업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계획은 원인자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고 승인신청서에 포함할 사항을 정함.

카. 기타 비용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및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환경처공고 제1992-10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법령안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2년 4월 2일 환경처장관

###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1. 제정취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법률 제4,493호('91. 12. 31.)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환경처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전년도 12월 말까지 시달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3월 말까지 제출토록 함.

나.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시행계획안은 환경보전실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 말 까지 경제기획원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이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토록 함.

다. 개선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의 종류를 정함.

라. 1,000m<sup>2</sup>이상의 복합시설물에 적용하는 평

균 오염유발계수는 시설물내의 각 용도별 오염유발계수와 면적당 표준용수사용량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토록 함.

마.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사항 및 고시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서를 30일 이상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고,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만료일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사.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식 등 각종 서식을 규정함.

### ◎ 환경처고시 제1992-20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2년 4월 4일 환경처장관

#### • 유해화학물질유해성심사결과

일련번호	물질명	심사결과
'92-9	(Z)-2'-메틸아세토페논 4,6-디메틸피리미딘-2-일 히드라존 (Z)-2'-Methylacetophenone 4,6-dimethylpyrimidine-2-ylhydrazone;Ferimzone [89269-64-7] C <sub>15</sub> H <sub>18</sub> N <sub>4</sub>	○ 유독물에 해당안됨
'92-10	(S)-α-시아노-3-페녹시벤질 (Z)-(1R-cis)-2,2-디메틸-3-[2-(2,2,2-트리플루오로-1-트리플루오로메틸에톡시카르보닐)비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시산 (S)-α-Cyano-3-phenoxybenzyl (Z)-(1R-cis)-2,2-dimethyl-3-[2-(2,2,2-trifluoro-1-trifluoromethylmethoxy carbonyl) vinyl] cyclopropanecarboxylate;Acrinathrin [101007-06-1]C <sub>26</sub> H <sub>21</sub> F <sub>6</sub> NO <sub>5</sub>	○ 특정유독물에 해당됨 ○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다만, 농약제조용 (6% 유제, 5.7% 액상수화제)은 제외

### ◎ 환경처고시 제1992-21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별표1]제424호 및 제3조[별표2]제9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 및 특정유독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2년 4월 4일 환경처장관

### ○ 유독물지정

지정번호	물질명
431	(S)-α-시아노-3-페녹시벤질 (Z)-(1R-cis)-2,2-디메틸-3-[2-(2,2,2-트리플루오로-1-트리플루오로메틸에톡시카르보닐)비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시산 (S)-α-Cyano-3-phenoxybenzyl (Z)-(1R-cis)-2,2-dimethyl-3-[2-(2,2,2-trifluoro-1-trifluoromethylmethoxy carbonyl) vinyl] cyclopropanecarboxylate;Acrinathrin [101007-06-1]C <sub>26</sub> H <sub>21</sub> F <sub>6</sub> NO <sub>5</sub>

### ○ 특정유독물지정

지정번호	물질명
135	(S)-α-시아노-3-페녹시벤질 (Z)-(1R-cis)-2,2-디메틸-3-[2-(2,2,2-트리플루오로-1-트리플루오로메틸에톡시카르보닐)비닐]시클로프로판카르복시산 (S)-α-Cyano-3-phenoxybenzyl (Z)-(1R-cis)-2,2-dimethyl-3-[2-(2,2,2-trifluoro-1-trifluoromethylmethoxy carbonyl) vinyl] cyclopropanecarboxylate;Acrinathrin [101007-06-1]C <sub>26</sub> H <sub>21</sub> F <sub>6</sub> NO <sub>5</sub>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 정정

관보 제11925호 ('91. 9. 20)에 게재된 환경처고시 제91-48호(정화조재질·검사기준 및 검사기관)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1992년 4월 10일 환경처장관

면수	구분	오	정		
5면	3. 정화조의재질기준	재료구분 재질기준 F.R.P 및 P.V.C	재료구분 재질기준 F.R.P 및 P.V.C 다. 구조물의 각 두께는 다음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table border="1"><tr><th>구분</th></tr><tr><td>정화조의 높이 1.5m 미만 1.5m 이상 1.7m 미만 1.7m 이상 1.9m 미만 1.9m 이상 2.1m 미만 2.1m 미만</td></tr></table>	구분	정화조의 높이 1.5m 미만 1.5m 이상 1.7m 미만 1.7m 이상 1.9m 미만 1.9m 이상 2.1m 미만 2.1m 미만
구분					
정화조의 높이 1.5m 미만 1.5m 이상 1.7m 미만 1.7m 이상 1.9m 미만 1.9m 이상 2.1m 미만 2.1m 미만					